

---

# 현대증권과의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인한 세금 안내

---

## (개인 거주자 用)

※ 본 내용은 기존 KB 금융지주의 주주님과는 무관하며 당사와 현대증권과의 주식교환을 통해 새로 KB 금융지주의 주주가 되실 분들에게만 해당됩니다.

### I. 포괄적 주식교환에 응하는 경우

#### 1.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과세

- (1) 현대증권주식과 KB 금융지주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양도소득이 발생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.
- (2)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며, 양도가액은 수령하는 KB 금융지주 주식의 1 주당 35,474 원이고, 양도소득기본공제로 연 250 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.
- (3) 양도차익에 대하여 22%(지방소득세 포함)의 세율이 적용됩니다. 다만, 대주주(지분율 1% 이상 혹은 시가총액기준 25 억원 이상인 주주)인 경우로서 주식보유기간이 1 년 미만이라면 33%(지방소득세 포함)의 세율이 적용됩니다.
- (4) 해당 양도소득세는 2017 년 2 월 말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예정신고 납부해야 합니다.

#### 2. 주식양도가액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

- (1) 현대증권 주식과 KB 금융지주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 양도가액의 0.5%의 세율로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며, 주당 양도가액이란 한국거래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을 의미합니다.
- (2)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탁한 금융투자업자가 증권거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.
- (3) 주권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2017 년 2 월 말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.

## II. 유의사항

1.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.
2. 구체적인 과세관계는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바,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
3. 주주님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관련 사항에 대한 상담 및 안내를 진행할 예정인 바, 세무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1588-6611(현대증권 스마트고객센터)로 문의 바랍니다.